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청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일원
- 둘레 100m, 양빈 46,000㎡, 부대공 1식 등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산 : 738,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사.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입찰예정시기, 과업기간, 용역금액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②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물품분류번호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참가등록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③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 측량용역[8115160401], 참가등록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를 적용합니다.

④ 분담이행방식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계	엔지니어링	지반	측량
참여비율	100%	87.1%	6.9%	6.0%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지반, 측량은 제외(엔지니어링 부분만 인정)  
예시) 엔지니어링 87.1%에서 대표사 57.1%, 지역업체 30%일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 3점 인정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참여,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0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점수	3점	1점	0점

다. 공동도급(공동, 분담, 공동+분담(혼합))일 경우

-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의 기술인으로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3) 사업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 이외에 다른 공동 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4) 그 밖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을 적용합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제출일 : 2026. 07. 03.(금) 09:00 ~ 18:00 까지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 해양수산과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5부(1부 회사명표기, 4부 회사명 미표기)
- 엔지니어링주체활동 신고증 및 등록수첩 사본, 기타 참가등록증사본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및 기타 접수 불가)

#### 4.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25-387호, 2025.07.09)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60호, 2025.06.11)에 의거 우리 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일정을 개별 통지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합니다.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우리 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8.7점) 이상을 얻은 업체(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를 선정하게 되며, 별도 통보에 의하여 가격경쟁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마.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45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0점)

- 바. 적격심사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 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아. 기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통보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이나 업체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투입예정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청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 발견될 시는 해당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 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바.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사.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안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인천광역시 중구청 해양수산과 (☎ 032-760-8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문의처
- PQ,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관련 : 중구청 해양수산과 (☎ 032-760-8871)
  -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 중구청 재무과 (☎ 032-760-7193)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